

	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1. 3 . 1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산학협력단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기획처장, 학사지원처장, 입학학생처장, 도서관장, 정보관리소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- ②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- ③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- ④교·내외 연구사업비,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산학협력단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- ⑥산학협력 운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평가
- ⑦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⑧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8조(회의록)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